

제346회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2 호

국회사무처

일시 2016년11월14일(월)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4. 조세법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2.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5. 아동수당세법안(계속)

상정된 안건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5)(계속)	11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	11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	11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5)(계속)	11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0)(계속)	11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	11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	11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계속)	11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7)(계속)	11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1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	11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계속)	11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3)(계속)	11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	11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6)(계속)	11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	11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	11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	11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97)(계속)	11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	11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	11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5)(계속)	11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	11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08)(계속)	12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	12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2
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계속)	12
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1)(계속)	12
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2)(계속)	12
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75)(계속)	12
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	12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48)(계속)	12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2
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3)(계속)	12
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2)(계속)	12
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	12
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3)(계속)	12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8)(계속)	12
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4)(계속)	12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7)(계속)	12
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0)(계속)	12
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2
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	12
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	12
8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	12
8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8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9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9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9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	13
9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9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	13
9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9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	13
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3
10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0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0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3
10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0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0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3
10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3
10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1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1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3
1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3
114. 조세법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계속)	13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계속)	13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계속)	13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	13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립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	13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	13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5)(계속)	13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	13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4)(계속)	13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	13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	13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계속)	13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	13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	14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1)(계속)	14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	14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2)(계속)	14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	14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1)(계속)	14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5)(계속)	14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0)(계속)	14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2)(계속)	14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	14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1)(계속)	14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계속)	14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0)(계속)	14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계속)	14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	14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	14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1)(계속)	14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7)(계속)	14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	14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3)(계속)	14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	14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	14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4)(계속)	14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계속)	14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4)(계속)	14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	14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	14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19)(계속)	14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4)(계속)	15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0)(계속)	15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	15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8)(계속)	15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	15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	15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1)(계속)	15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	15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5
1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1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1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1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5
20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5
20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202.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20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20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205.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10시43분 개의)

○소위원장 이현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자로 새누리당 추경호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엄용수 위원님이 보임되었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박광온 위원님이 보임하셨습니다.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지난 1차 소위에서 결정한 심사 방향에 따라서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법안 또는 조문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그리고 합의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협의한 대로 합의가 된 것은 합의를 하고 또 계속 계류시켜서 논의할 것은 계속 계류로 하고 또 계속 협의될 사항은 협의하는 세 가지로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특히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있는 사항은 첫 번째는 쪽 일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5)(계속)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5)(계속)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0)(계속)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계속)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7)(계속)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계속)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3)(계속)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6)(계속)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97)(계속)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5)(계속)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 대표발의)(계속)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08)(계속)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계속)
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1)(계속)
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2)(계속)
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75)(계속)
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48)(계속)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3)(계속)
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2)(계속)
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
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3)(계속)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8)(계속)
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4)(계속)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7)(계속)
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0)(계속)
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
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
8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
8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8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9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9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

원 대표발의)(계속)

9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
9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9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
9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9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
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1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10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10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0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10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11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1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1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14. 조세법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계속)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계속)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계속)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5)(계속)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4)(계속)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계속)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1)(계속)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2)(계속)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1)(계속)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5)(계속)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0)(계속)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2)(계속)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1)(계속)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계속)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0)(계속)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계속)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 (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1)(계속)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7)(계속)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3)(계속)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4)(계속)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계속)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4)(계속)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19)(계속)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4)(계속)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0)(계속)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8)(계속)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1)(계속)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1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1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0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0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02.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20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0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205.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46분)

○소위원장 이현재 의사일정 제1항 오세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05항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세법안까지 이상 20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 조의섭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소위 심사자료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제척기간 적용사유 확대 및 적용가액 하향조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적용사유 확대 문제입니다.

주요내용은 해당 재산의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특례제척기간 적용사유에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미등기 또는 허위등기된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조세회피·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서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금이나 골동품 등 소유권 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 명의개서가 필요 없는 자산도 있기 때문에 정부안의 문언이 좀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적용가액 하향조정 문제입니다.

특례제척기간 재산가액 요건 5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초과로 하향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특례제척기간제도가 1999년에 도입되었는데 그 이후에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고 있어서 다소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례제척기간을 하향조정하더라도 적용대상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앞부분의 상속세

특례제척기간 적용사유 확대 부분은 정부안이 조금 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일단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제척기간 적용가액 하향조정은 하향조정하자는 개정 취지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게 그동안의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자연 확대된다는 측면도 있고 다른 유사제도가 50억 원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제척기간 적용 확대 이것은 동의하는 거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지요. 앞부분 ‘가’는 동의하고 ‘나’는 하향조정……

○소위원장 이현재 하향조정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취지에는……

○소위원장 이현재 금액을 50억이 30억 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좀 검토를 같이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위원 적용가액 하향조정안은 김현미 의원 안인데요. 저는 이것 하향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적용사유 확대, 이게 정부안인 것이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예.

○박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부안대로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박광온 위원 정부에서 하향조정을 어느 정도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액수는 조금 더 얘기하자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정부 생각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조금 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지금 저희가

첫 날이기 때문이에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주현 위원 저도 두 가지 안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 김현미 의원안 둘 다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다른 말씀 안 계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1항은 정부안 그대로 합의를 하는 결로 하고 다만 적용가액 하향 조정은 전문위원하고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심의 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위원 그런데 이게 50억에서 30억으로 내려가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하자는 게 김현미 의원님 안인데 정부에서는 30억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건 검토해서……

○박영선 위원 그런데 그 범위가 50에서 30억이면 중간 지점을 하면 40억 이렇게 하자는 뜻인가요?

○소위원장 이현재 아니, 글썄 지금 정부에서는 금액 범위를 검토하자는 뜻이니깐 그건 전문위원하고 정부하고 협의해서 다음 회의 때 확정 짓자는 말씀입니다.

○기획재정부제실장 최영록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제도가 뭐냐 하면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데 무신고하면 15년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사실상 부과제척기간을 영구화시키는 겁니다. 안 날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를 들면 50년이든지 무기한으로 과세를 하자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99년에 이걸 도입할 때도 그 당시 가격으로 50억이거든요. 지금 한 16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동안 물가상승률 이런 걸 감안하면 그 당시보다 지금 이미 상당히 대상이 넓혀져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하고 해외 금융계좌 무신고하게 되면 형사처벌하게 되는데 그 기준도 50억입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해야 되지 않는냐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하여튼 정부에서는 안건이 지금 205건이니깐 간단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 말씀 주신 포인트 중심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박영선 위원 그러면 정부는 더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50억에서……

○박주현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소위원장 이현재 내리는데 얼마로 가느냐 하는 거니까……

○박주현 위원 제 생각에 어차피 지금 제척기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걸 제한을 두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차피 예외를 인정해서 하여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몇 가지 그런 경우를 새로 정부도 제안을 하신 거고요, 비거주자의 경우에. 그리고 액수에 대해서 30억으로 줄이는 건 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최종 결정은 다음 회의 때 정부하고 전문위원실, 위원님들 의견을 참조해서 검토해서 대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琳 위원 이게 적용사유를 확대하는 건 찬성, 적용가액 변경은 추후에.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요.

○전문위원 조의섭 다음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의원님께서 소관 상임위원회 제공 자료 범위 구체화에 대한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국세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조세의 비과세·감면 세부내역 및 그 외의 자료’로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국세기본법 85조의6제5항은 과세정보의 보호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수행 조화를 위하여 비밀유지 조항의 예외로서 2010년에 신설된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감시·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들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만 현행 규정에 따라서도 비과세·감면 세부내역의 자료는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현재 자료를 비과세·감면 세부내역 및 그 외의 자료로 더 구체화하신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현재도 상임위에서 의결하시면 통계 목적이거나 아니면 정부를 통제하는 목적으로는 저희가 가공한 자료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칠 경우에는 조금 더, 그냥

자료보다는 오히려 대상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또 이게 불명확해서 ‘비과세·감면 세부내역’ 그러면 어떤 개인의 과세정보까지 포함돼서 요청되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현재 자료라고 돼 있는 게 비과세·감면 이렇게 되면 축소된다는 것과 개인 자료가 들어갈 수 있다는 두 가지 포인트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개인 자료 하는 부분만 빼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차피 지금 저희가 81조의13에서, 지난번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이 많으셔서 저희가 사용목적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아주 포괄적으로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개인의 식별자료를 가공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그런데 이 규정을 이렇게 고칠 경우에는 좀…… 지금도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현재 자료보다도 제공 범위가 축소돼서 해석될 범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걸 집행하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좀 더 소극적으로 이 부분이 적용될 우려도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과세·감면 세부내역이라는 게 그러면 개인의 식별자료를 하지 않은 개인의 개별 과세정보까지 포함하는 거냐라는 논란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지 않다라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님 말씀……

○박광온 위원 축소는 아니고요. 이 비과세·감면 자료를 좀 더 확실하게 제공받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외의 자료라고 다 포괄하기 때문에 축소는 아니고 또 특별히 어떤 개인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건 아닙니다.

박광은 의원님께서, 제가 여쭙 보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이것 자체가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과세정보까지 포함하는 건 당연히 아니실 테니까, 그렇지만 비과세·감면 세부내역에 대한 걸 좀 더 강조하고 싶으신 취지로 이해가 된다면 그런 박광은 의원님의 이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문안을 한번 저희가 같이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박광은 의원님이 개정안을 내신 취지를 살려서 정부하고 전문위원이 대안을 해서 다음번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문안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光琳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자료라는 말이 2010년에 들어온 거예요, 자료라는 말이. 그 다음에 지금은 비과세·감면의 세부내역 및 그 이외의 자료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자료에 기존 자료들이 다 포함되니까 줄어드는 건 아니고 특히 비과세하고 감면의 세부내역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부내역은 안 맞다.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에다가 추가해서, 비과세하고 감면 자료를 특히 보고 싶다고 하면 세부내역이 들어가면 개인정보에 관련되는 부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더라도 삭제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부의 우려, 또 박광은 위원님 제안 또 김광림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다음 회의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박광은 의원님께서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사항 보고 및 공개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세청장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보고 근거를 마련하고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제도는 2000년도 국세청 훈령을 통해 도입되어서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0년도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보고 근거를 국세기본법에 명시하는 것은 납세자보호관의 활동과 관련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페이지 후단입니다.

다만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주기적 보고의무는 납세자보호관의 실질적 독립성을 보호하려는 국세기본법의 취지와 일부 배치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내부 보고 관련 사항은 법률보다는 훈령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사항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간단히 말씀드리면 납세자보호관의 국세청장에 보고는, 납세자보호관 자체가 지금 국세청 훈령에 의해서 오히려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성을 저해할, 독자적인 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해서 이것을 법에 명시하는 것보다 현재처럼 국세청 훈령이라든지 해서 현행처럼 저희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장의 연례보고서 제출은 2017년부터 국세통계연보를 통해서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사항도 지금 국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가 제도개선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사항이 좀 더 충실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일반 공개 부분은 지금 과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유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진행했는데……

엄용수 위원님이 추경호 위원님 대신에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용수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풀어 주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고, 실제로 내부인사로 다 보임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쪽 있어 왔는데,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보다 더 실질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그 취지를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납세자보호담당관 역할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지나치게 기관 외의 자격으로서 또 국회에 자료가 제출이 되고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자체적인 하나의 납세자 보호를 위한 기능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게 아닌가 해서,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 실효적인 역할을 하도록 나름대로 국세청 내에서 보완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답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 박광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납세자보호관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권리보호에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용수 위원님 말씀처럼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국세청장한테 보고의무를 지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직적으로 운영이 되는 방법보다는, 저희가 국세청하고 논의해서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에 대한 대책들을 현장도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납세자 보호 부분에 있어서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점검하고 만들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가 대안을 만들어서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개방형직위 운영 및 임기 명시입니다.

주요내용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담당관의 임용기간을 각각 3년으로 법률에 명시하며,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을 법률

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방형직위 제도 취지상 관리자급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게 제도적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경우에는 서울·중부·부산청을 제외한 나머지 121개 보호담당관이 모두 계장급, 5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미 3년의 임용기간은 보장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다만 개정안에 이런 취지를 담음으로써 보호관 및 담당관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적어도 124명 중에 3명까지는 과장급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국세청 소속 과장급의 경우에도 개방형직위로 운영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개정안에 있는 내용대로 하게 되면 공모 직위 운영 규정과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수정안으로서 담당관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당관’만, 그렇게 운영하는 수정안 의견을 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 부분도 저희가 내부 인사냐 개방직이나 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저희가 외부 인사로 한번 해봤었습니다. 외부 인사를 해 봤더니 내부 인사가 좀 더 실무경험이나 사명감이 낫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내부 인사로 임용을 하기도 하고, 지금 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는 지금 고위공무원하고 그다음에 과장급에 있는 자리에 대해서 지금도 저희가 정부 전체적으로 개방형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생각으로는 경직적으로 딱 여기 세법에 정해 가지고, 개방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박광온 위원님 말씀하신 게 납세자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의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목적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의견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살려서 정부안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에서는 기존에 하던 시스템을 고수하려고 하는데 납세자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대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점을 유념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9페이지입니다.

국세 부과 제척기간 규정의 보완 내용입니다.

정부안인데,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특정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뿐 아니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는 명목으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예외적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된 과세기간에 대한 재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을 해 줌으로써 과세권의 잘못된 행사를 바로잡도록 하는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은 정부안이니까 이견 없으실 거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것은 합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계속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조사 결정 시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 및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입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외에 심사·심판청구도 선택적·임의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내용이고요, 재조사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 제소기간 및 기산일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불복절차를 재청구하는 것은 금지하고 행

정소송으로만 다투도록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으로만 다투도록 하다 보니 3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불리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개정안은 납세자의 구제수단을 다양화하는 취지에서 임의적인 심판청구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놔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 수 있도록 해 놔는데 기산일 규정이 없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 후속처분에 대한 심사·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조사 결정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90일의 결정기간에 심사·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면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단서를 바꾸고요.

그다음에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조사에 따른 일정한 후속처분 기간이 경과하면 제소가 바로 가능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1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저희가 달아 놔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수정의견 잘 만드셨는데, ‘처분기간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다음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문구는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다음에 2호에서도 마찬가지로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이거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동의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것도 합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의섭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심사·심판청구에 있어 재조사결정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중복 세무조사 금지의 예외사유로 명시하는 내용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의 범위를 현행 ‘통

지 내용의 적법성'에서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으로 축소하고, 당초 통지 내용을 유지하는 결정은 할 수 없도록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해서도 재조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재조사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있어서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재조사 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범위,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만, 안 제81조의4에 보면 재조사 결정의 범위를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고 이미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동일하게 이 규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또한 조사범위, 기간도 이것을 너무 재량을 주게 되면 오히려 권리 미확정 상태로 기간이 지속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90일로 한정하는, 그렇게 문구를 마련했습니다.

수정의견은 15페이지에 달아 왔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대체로 동의하는데, 일수 같은 것 전혀 이의가 없으신지, 약간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냥 이렇게 바로 결정하기가 어렵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박주현 위원님은 날짜 문제를……

○박주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약간 생각을 달리 하실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망설여집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협의를 하고, 다만 지금 박주현 위원님께서 날짜 문제에 대해서 혹시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니까 합의를 전제로 하되 날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음 회의 때 재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리고 여기 조문은 전문위원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렇게 하세요.

조건부 합의로 하겠습니다.

위당 이것은 좀 조정해서 다음 회의 때 최종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의섭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현재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30일이지만 30일 내에 처분청의 의견서 작성, 그다음에 이의신청인의 항변자료 준비 등 심리준비기간만 약 보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심리기간은 15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납세자 권익보호를 증진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 기간을 90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안이니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왜 지방세하고 차이가 있지요? 지방세는 90일인데 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난이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제도별로 약간씩 다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같은 것은 30일로 하는데 경정청구는 60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도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것은 일치시킬 필요가 있을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왜냐하면 이의신청이 있고 또 심사·심판청구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늘리면 늘릴수록 납세자한테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어쨌든 납세자 입장에서는 빨리 그것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어서 30일로 했는데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 너무 딱딱한 케이스가 발생해서 늘리는 거라면 60일 아니고 한 45일 정도로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가 2016년부터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추가항변권도 제도화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납세자도 추가항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과세관청도 또 항변 제기에 따라 추가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는 90일이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한 60일 정도면 양쪽의 형평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날짜에 대해서는 다시 또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일반적으로 처분청이 어떤 결정을 가능하면 납세자를 위해서 빨리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처리도 민원처리 기간을 줄인다고 하는 마당에 처분청 사정을 고려하는 의미에서 날짜를 늘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납세자의 권익을 오히려 실효시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의신청을 해 왔는데 그게 빨리 결정이 안 되면 사람이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래서 이것은 줄여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처분청이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지 이것을 그냥 편의대로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만일에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꼭 필요하면 기존 30일로 그대로 해 놓고, 예를 들면 처분청에서 얼마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넣어서 그렇게 사용해야지 이것을 범용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지금 박주현 위원님께서 45일 제안 또 엄용수 위원님은 30일 플러스 단서를 달자고 하는데, 그냥 45일로 동의하시지요.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특정사안에 대해서 너무 길게 논의할 필요 없이, 그러면 기본취지에는 동의하되 날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니까 30일로 단서를 달 거냐 45일로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하고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다음 회의 때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니면 정부안은 저희가 설득을 다시 한번 하든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것은 재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17페이지입니다.

심판청구에 대한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입니다.

현행 이의신청인과 심사청구인에만 인정되고 있는 국선대리인을 심판청구인에게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국선대리인 제도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14년 세법 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만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에서 법적 “근거 없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선심판의 경우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설명 끝났나요?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 부분은 저희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실제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신청요건인 종합소득이나 재산가액 같은 경우를 심판원에서 지금 저희가 확인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식인지 국세청하고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시범 실시를 했잖아요. 운용 현황을 한번 좀 알아볼 수 있나요?

○**조세심판원행정실장 신봉일** 현재 12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마이크에 대고 성함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심판원행정실장 신봉일**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신봉일입니다.

현재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 12명으로 지정이 되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그래서 그 운용 평가를 한번 해 보라는 거지요.

○**조세심판원행정실장 신봉일** 지금 국세청의 경

우는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하고 소득금액이라든가 이런 제한이 있는데 현재 조세심판원에서는 납세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하고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납세자가 그런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에 그것을 명기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국세청과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최차관님, 정부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감안해서 전문위원실하고 대안을 정리해서 이 문제도 다음번 회의 때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에 관해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특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후발적 경정청구뿐 아니라 일반적 경정청구에 대해서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5년부터 일반적 경정청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서 경정청구 기간과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동일해짐에 따라 5년 제척기간이 거의 도과해서 경정청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정청구에 대해서도 2개월의 특례 제척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정부는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일반 경정청구가 제척기간 직전에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찬성합니다.

○박광온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제척기간 확대 신설은 합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20페이지는 국세기본법 중 기타 정부안 개정사항인데 이것은 정부 측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먼저, 금융·보험업자가 교육세 신고의무 위반할 때 가산세 적용하는 건데요. 원래 교육세가 주로 서택스(surtax)로 많이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이때까지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보험업자에 대해 영업 수익의 0.5%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세의 경우에도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은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5년인데 중단과 정지에 관해서 민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납세자에 대해서 환급청구를 안내한다든지 통지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하느냐 하는 그런 해석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무서장이 납세자한테 환급청구를 안내하거나 통지할 때는 중단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용수 위원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신고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 가산세 매기는 이것이 금융·보험업자한테 좀 공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를 들면 혹시 협의가 좀 이루어졌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현재 모든 신고분에 대해서는 다 가산세를 적용하는데 교육세 이 부분만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소위원장 이현재 아니, 지금 염용수 위원님 질문은……

○염용수 위원 갑작스럽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입법예고하고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입법예고하고 다 거친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정부안을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요……

○소위원장 이현재 입법예고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금융·보험업 하니까……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입법예고 때 별다른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아니,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니까 일반 그런 대상 업종에서는 알기가 어렵다 이거지요. 그래서 엄용수 위원님 질문은 이 업계하고 의견 교환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입법예고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회의 때까지 한 번 더 체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용수 위원** 이런 것도 가능하면, 가산세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시간을 좀 주면 안 좋겠느냐, 그냥 바로 개정해서 앞으로 가산세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일방적인 것보다는 조금 적용기간을, 예고가 미리 된 상태에서……

○**소위원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엄용수 위원** 예를 들면 내년부터가 아니고 내후년부터라든지 예고 기간을 줘서 준비 기간을 좀 주자 이런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교육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 가산세 적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통합성, 그 규정을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봐서 일단 인정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혹시 이것이 납세자한테 하는 환급청구 안내나 통지가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응 봐서는 그렇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찬성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저는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두 번째 효력 불인정 명문화 내용은 합의된 것으로 하고, 금융·보험 업계 가산세 포함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음번 회의 때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교외체험학습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외체험학습비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이 2015년 경우에 전체 학교의 한 60% 정도에서 68%까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08년부터 교육비 공제한도를 확대한 바 있고, 공제 대상에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대금, 교복구입비, 방과후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를 추가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비 공제 수준이 낮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최근 학교에 있어서 교과 성적뿐 아니라 체험활동 경험에 굉장히 중시되는 추세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는 의무교육 지출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취지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같이 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 하더라도 전체 공제한도는 현재와 같이 300만 원으로 유지되고, 교복구입비 같은 경우와 같이 별도의 공제한도를 두게 된다면 과도한 조세감면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 전체적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교육비 항목은 현재 법체계상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체험학습비를 시행령에 규정하겠다 그래서 같은 취지의 저희가 세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표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취지는 동의하되 지금처럼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체험학습비를 포함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전문위원이 여기 공제한도를 5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는 평균 체험학습비가 연 28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학생 1인당 한 30만 원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저는 일단 좀 부정적입니다. 교육비 공제 관련해서 박광온 의원님이 일정 소득 이하의 경우에 세액공제율을 20% 올리는 안을 제출하신 것이 뒤에 있던데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교육비 공제가 소득 4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분이 14.6%밖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면세 대상 48% 다 빠지고요. 그리고 4000만 원까지는 거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라서 여기서 추가로 하는 것이 별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히려 지금 대학생 900만 원, 초·중·고 300만 원이 여기에 있는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교육교복구입 또 방과후학교 수업료, 제가 교육부에서 다 받아 봤거든요. 이 내용이 초·중·고 300만 원이 안 차는 경우가 많고, 대학생 900만 원 안 차는 경우가 많아요.

좀 룬이 있으니까 추가로 수학여행비도 넣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것 자체가 조금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차라리 일정 소득 이하의 경우에 세액공제율을 조금 높여 준다든지 아니면 자녀장려세제를 조금 더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소득재분배에 훨씬 도움이 되지 자꾸 세액공제 대상을 더 집어넣는 것이, 물론 300만 원, 9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많이 안 차거든요. 그래서 같은 한도 내지만 이 공제 항목을 늘릴수록 세감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세 감의 혜택은 고소득자에게 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반대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박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 드리면, 물론 전체적인 체계에 대해서 그런 논의는 저희가 같이 더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이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지금 체험학습비가 정규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제도 내에서 이 제도에, 저희가 안 차기 때문에 이런 취지보다는 다른 것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전체적인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그 항목을 늘리는데 시행령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라든지 또 박광온 의원님이 내신 이런 전체적인 틀에 대한 논의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고요. 그 부분 더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정부도 기본 취지는 공감하는 거고, 다만 박주현 위원님 말씀대로 자칫 세액 감면만 결국 이렇게 넓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류해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23페이지입니다.

박광온 의원님께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비과세에 대한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1998년에 도입되어서 도입 당시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2013년 2월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공제금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은 사회취약계층인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사실상 유일한 노후 재원으로서 복지지원금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으로써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퇴직공제금 과세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개인당 세 부담은 좀 적지 않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현재 소득세 부과는 10억 3900만 원인데요. 1인당 평균 소득세액은 한 2만 8000원 정도,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건설 일용근로자의 낮은 퇴직공제금 수준을 감안할 때 비과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만 다른 직종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것 같고, 14년 만에 퇴직소득 과세 체계를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밑에 주석을 달아 뒀는데요. 종전에 정률 과세를 하던 것을 소득금액에 따라 과세 체계를 개편해서 퇴직소득 자체가 소득세에 관한 부담이 많이 줄었다는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뒤에 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14년도 세법 개정에서 퇴직급여 수준별 차등 공제가 적용됩니다, 정률 공제 대신.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에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른 소득세액 2만 8000원은 사실은 종전 제도에 따른 세 부담액이고요.

2015년 기준으로 쪽 보면 1인당 평균 퇴직공제금은 256만 원인데 근속 연수가 3년만 되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평가됩니다. 이런 제도 개선을 감안해서 거의 세 부담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비과세 부분에 대한 감면 항목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신중한 측면을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근속 3년이 무슨 기준이지요? 일용직 노동자의 근속 3년에는 어떤 기준이 있지요? 좀 전에 최 차관님께서 근속 3년의 경우 퇴직공제금의 세 부담이 없다 그러는데 근속의 기준이 뭐냐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여기 보니까 근속 연수 계산은 월 21일을 근무한다는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월 21일, 3년 동안 계속 한다는 경우……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일용직 노동자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런 경우가 몇 % 정도 돼요? 나와 있어요, 통계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런데 월 21일 근무를 안 하고 더 밑으로 하게 되면 소득이 더 적게 됩니다.

○엄용수 위원 일용직이 그렇게 3년을 근무할 수 있느냐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 제도 자체가 매년 해 가지고 어느 한 군데 근무하다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그것을 다 통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통계가 혹시 있어요? 없으면 관계없고요.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가장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데, 앞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상 이것이 유일한 노후 재원이라는 말이지요. 거기다 꼭 세금을 붙여야 되나, 정부가 받는 세금의 규모는 대단히 미미한데? 여기 보니까 10억……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10억 정도인데, 저는 박광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필요성, 세 감도 적고 그런 측면은 있지만 이것이 너무 전체 구도를 흐트리는 측면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박광온 위원 알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사실 건설직 일용 노동자의 약간 양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하고 상당히 고임금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 부분과 예전에 주신 것 중에 총 급여 3500만 원인 근로자의 퇴직소득의 실효세율이 2.4%에서 0.3%로 대폭 낮아졌다고 하는 그런 점을 참조하면 다른 식의 지원 방안이 들어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박광온 위원님, 이것은 계속 계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예.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 하세요.

○전문위원 조의섭 25페이지입니다.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저소득자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율 인상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 인상은 현행 15%를 20%까지 5%p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가계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경기 회복에 기여하자는 취지로서 세액공제율을 올렸는데 사업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을 지는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만,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라기보다는 비재량적 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세제 지원 성격의 공제항목으로서 다른 세액공제 항목에 비교해서 현저히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현행 세액공제 체계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공제율을 20%로 인상할 경우에는 대규모 세수 감소도 조금 우려가 됩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자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율 인상입니다.

현행 세액공제율을 유지하되 종합소득과세표준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로 인상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비 지출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2011년 같은 경우에는 6배 정도였지만 격차가 점점 더 확대되어서 2016년 1분기에는 거의 8배 수준의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어 줌으로써 계층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세액공제보다 현저히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게 된다면 세액공제 체계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법 개정에서 2014년에 교육비 공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의 방식으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지출의 많은 부분은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 했습니까?

○전문위원 조의섭 예.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양면의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인상 부분은 전문위원도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본인 외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도 모두 공제상에 포함되고 그다음에 필요적 경비라기보다 이런 정책적 지출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인데 지금도 15%가 다른 것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이런 높은 것을 하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율 부분은 이 부분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득공제였다가 세액공제로 바뀌었어요. 바뀌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과세표준이 3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1.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또 그 안에 3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의 면세자 비율도 55%나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이런 식으로 저소득층에서 인상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실제로 이 취지보다는 저소득층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면세자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기가 지금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참고로 위원님들은 국민을 대변해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감면을 많이 해 주는 게 좋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동시에 면세자 비율이 지금 48%로 높아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도 함께 하시면서 토론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소위원장 이현재 박 위원님.

○박주현 위원 의료비 공제율 올리는 것은 절대 반대고요. 지금 의료비의 소득 역진효과는 엄청나게 커요. 아까 교육비의 경우에 4500만 원 이하가 14.6%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의료비는 4500만 원 이하가 7.8%밖에 안 되고 그래프가 거의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에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의료비 공제한도가 700만 원이면서 부양가족까지 해서 자기 부모님 하는 그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이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엄청나게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비 공제율 높이는 건 저는 무조건 반대하고요. 지금 박광온 위원님 생각하시는 3500만 원 이하에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세 감면을 뭔가 늘리는 것에 무조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데 이 경우에는 필요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의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 지금 과세표준을 3500만 원으로 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안 되고 총급여액도 아니고 총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세액공제율을 20%로 올리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경우에 저는 어떤 면에서는 교육비 공제 한도는 좀 줄이면서 공제율을 좀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의료비 공제 한도가 너무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로자 부분은 무조건 한도도 없이 다 빼 주잖아요. 그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도 없이 다 빼 줍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한 말씀만 더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비 세액공제율 이슈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교육비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지원 자체를,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왜냐하면 지금 대학생 등록금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가장학금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저소득층에는 여러 가지 재정 지출에 대한 게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알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박주현 위원 그것도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총소득 2500만 원~3500만 원까지에 대해서는 기왕의 어떤 지원제도가 잘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좀 효력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하나 여쭙 볼게요.

지금 박주현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과세표준 3500의 경우와 총소득 3500의 경우 혹시 대상 숫자를……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마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과표기준 3500이면 총소득 6000만 원 수준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저희가 한번 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만 6000만 원 수준으로 하면 전체 근로자로 치면 한 87%나 됩니다.

○박광온 위원 총소득으로 하면?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총소득으로.

○박광온 위원 아니, 과세표준 말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가 총소득 3500만 원은 통계를 한번 쟁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분 말씀 안 계시면……

○박광온 위원 조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번 교육세·의료비 20% 하는 부분은 계류시키고, 두 번째 박광온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지금 과세표준을 총소득 3500으로 하자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하시자는 말씀인가요?

○박광온 위원 예.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2항 부분은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 하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2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의 연령 조건은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확대하고 군복무 중인 직계비속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직계비속 기본공제 연령은 2013년 성년의 기준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습시다만 계속 20세로 유지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21세 이상 자녀가 교육 중이거나 군복무 등에 따라 소득이 없이 계속해서 부모의 부양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도 현재는 공제를 못 받고 있는, 그래서 실질 과세 및 응능부담의 원칙에 관한 세법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세 미만에 대해서 공제를 허용합니다마는 학생의 경우에는 24세 미만까지 확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경우에는 존속에 대해서만 연령 기준을 상향하고 있습니다만 부양가족으로서의 본질이 동일한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군복무 중인 병을 기본공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병사 월급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는 조금 비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 부분은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진짜 기본적으로 이 민법상 성년 기준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세자 비율이 높다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자칫하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주로 혜택이 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미취업 성인자녀에 대해 부양하는 현실은 인정이 되지만 또 성인자녀에 대한 세제 지원에 대해서 적절하냐 하는 지적도 충분히 있고요. 어떤 항목별로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계비속 연령에 관계없이 지금 공제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저도 반대합니다. 일단 복무 중

인 병을 제외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고 25세로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60세 이상 직계존속도 65세로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현재 60세인 분들이 자녀를 부양하고 있지 자녀가 60세 된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는 저는 매우 적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안에 취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반대란 말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광온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온 위원 저도 찬성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계류시키겠습니다.

계류해서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3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용조문 개정 사항입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 금지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서 조문 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합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11시 50분인데 12시까지 하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2시 반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조의섭 계속해서 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사망 장애 공제금 비과세 내용입니다.

현재 노랑우산공제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공제금을 비과세하도록 그러한 내용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사망이나 후유장애로 받는 공제금은 사실상 4대보험 및 공적연금 가입자가 받는 보상금·급여와 같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과세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4대 보험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사망일시금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과 같이 하더라도 세수 손실의 발생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는 이 부분이 이런 여러 가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어려움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게 타 소득보다 세 부담이 낮은 퇴직소득세율을 적용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제금 납입 시 소득공제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령 시 비과세 하는 것은 이중 혜택에 해당된다고 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따져 봤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계실 때 재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것은 계류시킬까요?

○박주현 위원 재논의.

○소위원장 이현재 재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그러면 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금액 하향 조정 및 의무발급대상에서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박광온 위원께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내셨습니다.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법인세법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부터 건당 거래금액을 3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시행되다가 2013년의 세법 개정으로서 30만 원 기준금액이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어서 2014년 7월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 형평성 실현에 기여할 수 있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이 되면 추가적인 세원 확보로서 소득세 및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상

당한 규모로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렇게 개정하게 될 경우에 영세한 납세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시키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말씀드렸듯이 하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변경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무발급 대상에서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하는 정부안입니다. 내용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증 의무발급제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고소득 전문직 외에 세수 탈루성이 높은 일부 소매업종이 지속적으로 추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자 입장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에 따라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과 과태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자가 의무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안의 내용은 정부의 세원 양성화 정책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계속 확대해 왔던 기조와는 전면으로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개정안처럼 하게 된다고 그런다면 전체 사업자의 38.7%만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으로 남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발급 현황을 보시면 10만 원 이상은 적은 것이고요. 많은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개정안은 조금 비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 부분은 현금영수증 발급제도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소비자가 원하면 다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무발급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만들었던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미발급 금액의 50%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게 비례성 원칙에 따라서 위헌 여부까지 판정을 받았었던 게 있는데 합헌판결은 나왔습니다마는 재판관 중의 3인이 과잉 제재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물론 투명성을 높여야 되겠지만 과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이 부분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미발급 금액의 50%를 부과하는 이 제도를 유지하면서 이것을 확대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제도 취지가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정부안에서 연간 수입금액 4800만 원 이하 사업자로 하면 4800만 원이라는 게 따져 보면 일평균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10만 원 이상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무발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대상이 크지는 않다, 실익은 적다는 차원에서 소규모 사업자들의 어떤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취지로 볼 때 기준금액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정부안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안은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소위원장 이현재 박광온 의원님 발의하셨으니까 제가, 이게 자칫 오해가 되는 게 3만 원 이하로 하면 굉장히 투명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한 측면이 있고, 3만 원 이하로 하면 자영업자를 위한 것 아니냐 하는데 반대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래시장 가서도 전부 다 의무적으로 다 끊고 장보러 가서 끊어 주기 때문에, 카드수수료가 또 대개 자영업자의 경우에 한 2% 미만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시지요,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일단 정부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뒤

로 가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예를 들면 과태료가 너무 높다 그러면 그것을 현실화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3만 원까지 확대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다시 재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납세자들한테 행정적으로 이런 규제나 또 의무사항을 면제해 줄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안에 대해서 찬성이고, 특히 기준이 4800만 원이라고 했지요? 4800만 원이면 한 달에 400만 원, 그러면 하루에 15만 원. 하루에 15만 원 이하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한다는 현실 자체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세관청에서 이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을 인지했을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불필요한 이런 규제들은, 제재들은 해소시켜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위원 지금 의무발급 대상이 1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하루에 15만 원 버는 분들은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소위원장 이현재 3만 원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박주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부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추가로 할 얘기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그 부분은 제외를 해주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인데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더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수증 3만 원까지 내려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협의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자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더 검토해서 추가 논의를 하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자영업자의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너무 의식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영업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카드수수료가 대개 지금 이 정도 되면 1.5%일 텐데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재래시장 가면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발급하기가 어려운 그런……

○박주현 위원 이거 현금영수증이잖아요.

○소위원장 이현재 아니, 그러니까요. 현금영수증.

○박주현 위원 카드수수료 문제는 없는 것……

○소위원장 이현재 아니아니, 현금영수증을 하면…… 카드수수료가 자동으로 카드 결제하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여기에는 안 나타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것이 우리 어려운 자영업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소규모 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별로 그런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이것을 한번 위반하면 과태료가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 사람들이 불확실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강조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정부안 이 안까지 하고 갈까요?

○전문위원 조의섭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일몰 연장입니다. 현재 2016년 말까지 되어 있는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일몰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2014년부터 국세청의 확정일자 자료 확보가 가능해지고, 월세소득공제 자료 축적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기로 정부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에 대한 세 부담 전가 가능성, 주택임대차시장 및 매매시장의 불안 우려 등을 감안해서 2014년 세법 개정 시에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도록

하되 2017년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시장 및 매매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비과세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과세가 유예되었던 지난 3년간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준비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바로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하게 되는 경우에 세 부담보다 더 큰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해서 임대소득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것은 지금 비교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41페이지 하단입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연기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의 기본 원칙과 공평과세를 저해할 측면이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확정일자 자료, 월세공제 증가로 인한 월세소득 자료 등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기본적인 과세 기반이 구축되어 만큼 예정대로 2017년부터 과세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특히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월세 임대시장의 경우를 감안할 때는 지금이 오히려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위한 적기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연장이라는 것을 과표 양성화 차원에서 이미 월세 세액공제를 하고 있고, 정부안에서 이미 월세 세액공제를 지금 종전 10%에서 12%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으로 비과세 연기 연장은 안 하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전문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정책의 신뢰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한 번 어떤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이 사건은 한 번 발표한 게 아니라 5개, 6개를 이 관련해서 이미 다 그런 선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겠다 그랬다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으니깐 또 공제율도 확대하고 또 기간 연장도 해 주고 그렇게 한다는 전제하에 또 전월세 확정일자도 국세청이 3년 이상 수집했고, 월세공제제도도 시행하고 등등 해서 이미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하겠다는 전제하에 너무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 딱 그 시간이 되니까 갑자기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있어서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직 주택임대차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조금 우위에 있는 지금이야말로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적기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고, 임차인에게 상당 부분 전가될 우려가 있다, 주택매매시장이 불안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이유로 들면 평생 못 합니다. 앞으로 영영 못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건강보험료의 문제, 국민이 정말 분노하는 부분이 옛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근로소득 얼마 가지고서 1만 원 남짓의 건강보험료 내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임대소득을 낼 수 있는 자산이 있는 분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런 지역가입자가 조금 더 건강보험을 내야 되는 문제는 앞으로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임대소득 과세가 건강보험료 개편의 어떤 촉구 그것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요즘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 중의 하나이고 또 시민들의 월세에 대한 부담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혹시나 이게 비과세에서 제외될 때 그 우려와 마찬가지로 결국 약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비과세에 대한 효과를 임차인이 맡아야 될 상황으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수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기간을 무리가 없으면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저는 사실 이것은 정상화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까 박주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다 동의하고.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요.

임대소득 2000만 원이 되려면 여기에는 ‘시가 5억 원의 주택 두 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어떻게 되지요? 전세 5억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할 경우 1년에 이자소득이 얼마가 나오지요?

○염용수 위원 1%대?

○박광온 위원 1%지요? 그러면 5억이면 500만 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5억 전세 네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계산하면. 그분들에게 이 세금을 계속 안 내게 한다는 게 과연 상식적일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 저희가 계산할 때 전월세전환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 지금 6% 정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박광온 위원 6%?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아파트는 지금 한 4.7%……

○박주현 위원 지금 6%까지 안 갑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전월세전환율 한 4% 정도……

○박주현 위원 4%, 이자보다 조금 많은 정도의……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왜 그러냐면 계산을 할 때 100%로 안 하고 주택가격에서 전세가 격 비율을 66.3%로, 계산 방식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일단……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전세금으로 따졌을 때 요즘……

○소위원장 이현재 박광온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박주현 위원 말씀하세요.

○박광온 위원 그래서 저는 좀 더 면밀하게 정부 쪽에서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이분들의 노후를 걱정해서 과세를 더 미룬다 하는 것은 아마 다수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더 하실 얘기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이것을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저희가 국세청의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 활용이라든지 이런 과세인프라는 지속 확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그때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소위원장 이현재 건강보험료,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왜냐하면 지금 임대수입에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 이분들은 건강보험료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세의 한 5배 수준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받게 되어서 그 당시에 이 부분을 할 때 저희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해서 이분들이 지역가입자로 갑자기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논의가 있었습시다만 이제 그런……

○소위원장 이현재 건강보험 언제 확정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 당시에 그랬는데 체계 개편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이 부분이 지금 그 제도가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임대수입에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이분들에 대해서, 아까 박주현 위원님 말씀하신 아주 부자 분도 계시겠지만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은 은퇴자, 주부 등 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부분들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월세나 전세시장에 대한 판단도 저희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거보다 공급이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또 전세에서 월세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예산정책처라든지 그다음에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한 전가도 상당히 우려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양면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박광온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는 나오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박광온 위원** 아마 그분들 중에 지역가입자가 몇 분인지,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분이 몇 분인지 통계가 나올 겁니다. 그 통계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하여튼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 이렇게 하세요.

사실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면세자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지만 지금 경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임차인의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건강보험 체계가 이렇게 많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정부도 불가피하게 2년 더 연장하자는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만 볼 것은 아니고 박광온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되는지 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다음번에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지금 시간이 많이, 12시 15분입니다마는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현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오전에 이어서 소위 자료 43페이지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 과세 기준 보완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기타소득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재직 중에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에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에 한하여 비과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재직 중에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에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명시함으로써 규정 해석상의 불명확성을 해

소하려는 것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현행법상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니까 과세한다고 하였다가 그게 행정소송에서 번복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상금액이 적은 등록·출원 보상과 달리 실시보상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를 신설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만 이게 세액 결정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법률로써 한도를 정해 주고 그 한도 이하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은 정부안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 다른 것 없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 전문위원 의견 중에서 비과세 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 및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국민한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아니고 이렇게 혜택을 주는 비과세의 경우에는 다른 입법례에서도 시행령에 규정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경우에도 시행령에서 이 부분의 비과세 한도를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수 위원** 시행령에 대충 비과세는 얼마 이하라고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저희는 연간 한 300만 원 정도로.

○**임용수 위원** 연간 300만 원.

○**소위원장 이현재** 차관님, 실시보상의 경우는 이게 크지 않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래서 지금 한도를 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런데 300만 원?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일단 정부안대로 합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의섭** 45페이지입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저소득자 자녀세액 추가 공제 신설 내용입니다.

먼저, 정부안에서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현행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1인당 30만 원인 출생·입양 공제를 자녀 수에 따라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함께 출생률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고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자녀 있는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출산에 대한 정책 대응 강화라는 신호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출산·입양 연도에 일회성으로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궁극적으로 출산·입양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사항입니다.

한편 부칙에서는 2017년 이후 출산·입양 신고한 자녀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개정안의 취지가 신생아의 출산 및 양육 비용을 일부 보전해 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16년도에 출산·입양 신고한 자녀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47페이지입니다.

박광온 의원님께서 저소득자 자녀세액, 종합소득과세표준 3500 이하인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 공제액의 100%를 추가로 공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기혼여성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유가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저소득자에 한정해서 자녀세액 공제액을 2배로 높임으로써 저소득 다자녀가구에 대한 출산·양육비용을 보전해 주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 납세자 일인당 한 25만 원 정도의 추가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다만 자녀세액 추가공제를 도입하더라도 근로

소득자의 48.1%에 이르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는 추가공제의 적용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오히려 추가공제 도입으로 면세자 비율이 더 확대될 우려가 있고 4000만 원 미만 근로자구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자녀장려세제하고 다소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저소득가구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소득자보다는 전체적인 자녀세액 공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은 앞부분의 정부안에 대해서 저희는 정부안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16년도 출산·입양 신고한 자녀에도 적용하는 방안은 저희가 출산 장려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소급하는 것보다는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박광온 의원님 안은 저희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시행이 됐을 경우에 일단은 세수감 규모가 예정치 추정은 6000억이 넘고요. 저희 정부에서도 한 4000억은 넘는 것으로 지금 세수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세표준 3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면세자 비율이 55%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하셨듯이 자녀장려금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아니, 제가 안 왔을 때 직무발명 보상금인가요, 그것 액수를 정하셨나요? 일정 금액 이하의 보상금 이렇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시행령에 300만 원으로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주현 위원 예, 그리고 자녀세액 공제 확대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공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고요. 자녀장려세제를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는데, 지금 이미 4000만 원 이하라고 그것이 잘 되어 있는데 재산이 1억

4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억까지는 조금 더 해 주고 1억에서 1억 4000까지 절반인가를 해 주는데 재산 한도를 조금 높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득 4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고소득층이 받을 염려는 없는 상태니까 재산 기준을 좀 늘림으로써 자녀장려세제를 조금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자녀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을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어쨌든 저출산 문제를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세제 혜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확대하는 정부안이나 제 안에 대해서 저는 여러 고민 끝에 내놓은 것인데 하여튼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요, 견해가 다르면.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의견……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부안에 대해서는 좋다고 하고 박광온 의원안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딱 그 감세 규모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왜냐하면 뒤에 이게 문제 있다라고 한 여러 가지 이유들,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들이 너무 많거나 하는 등등의 이유가 결국은 정부안이나 박광온 의원안이나 똑같거든요. 문제점은 결국 똑같고 그리고 자녀장려세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박광온 의원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광온 의원안은 3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서 확대를 하자는 것이고 자녀장려세제는 4000만 원 이하니까 이게 겹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제한이 되니까 그 부분을 풀어서 실질적으로 자녀장려세제가 실질화돼야 지금 박광온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가 그게 세수 감만 봐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자녀세액공제 안에 출산·입양공제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1명당 얼마씩 주는 것하고는 조금, 아무래도 출산과 입양에 제도상 인센티브를 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는 거기에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세수감도 고려되지만 제도의 스킴(scheme) 자체가 출산과 입양을 좀 더 촉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졌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EITC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2015년부터, 지금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그동안 확대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전제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감안을 해서 EITC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어떻게 보완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전반적으로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해서 이 제도개선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말씀……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박광온 의원님안은 차치하고라도 정부안을 지금 출생·입양 공제로 내놓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른 것보다도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펼쳤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 금년도에 내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몇 년 전에도 내놔는데 계속 이게 채택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놓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것은 추가적으로 내놓는 것이고요. 지금 자녀세액공제……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해 왔을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니까 자녀세액공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자녀세액공제도 자녀 1명당 15만 원으로, 3명 이상은 30만 원으로……

○이종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이런 것을 해 왔는데 그때는 왜 검토를 안 하다가 지금 왜 이렇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안을 내놓은 그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가 전체적인 저출산·고령화 종합계획에 따라서 그동안 해 왔는데요.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도 저출산·고령화특위도 구성이 돼 가지고 그런 수요도 있으시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확대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런 것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진작 했어야 되고 하려고 그러면 벌써 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갑자기 정부가 대단한 걸 내놓는 것처럼 이렇게……

하여튼 나 이것은 찬성을 하는데, 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지금 정권이 얼마나 흘렸는데 진작 하고, 저출산·고령화 얘기 나온 지가 지금 20년도 넘었는데 정부가 하려면 빨리 빨리 하고 그래야지……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의견들 없으세요?

차관님, 입양공제 30·50·70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시행 시기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2016년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소급 문제 때문에 그런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니까 일단 소급을 하게 되면 출산 장려를 유도하니까 이미 출산하신 분한테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소위원장 이현재 이게 세제 혜택이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가 출산을 장려한다고 보면 소급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시행일로 적용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소위원장 이현재 시행일부터?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소위원장 이현재 이게 지금 시행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이종구 위원 이것은 소급입법하고 관계가 없잖아……

○박주현 위원 재논의해요, 재논의. 반대입니다.

○이종구 위원 그러면 지금 2살부터 해 준다 그러면 되잖아. 그걸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출산이라는 게……

○박주현 위원 이런 형식으로 계속 조금씩 늘려가는데, 지금 있는 것도 없애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데 이게 출생하고 입양 공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생하는 연도에, 출생을 장려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자연

스러운 게……

○이종구 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제도 때문에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출산 안 할 사람이 출산한다 그런 얘기야?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소위원장 이현재 아마 이것은 상당한 메시지는 있을 것입니다.

○박주현 위원 둘 다 묶어서 재논의……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것은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설명하세요.

○전문위원 조의섭 4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거주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든든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실시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학부생에 대한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모든 소득분위 대학원생 및 9분위 이상 학부생에게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를, 상환기간이 도래한 후에는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시작된 이래 보시면 취업 후 상환학자금은 6조 9648억, 일반 상환 학자금은 8조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자가 등록금 등의 지출 시기가 아닌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 시기에 맞추어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두 대출 제도가 모두 생활비 대출을 포함하고 있는데 생활비 대출 대상인 숙식비 등은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생활비 대출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등록금 등의 경우에는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이해 부족으로 상당수 적용받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다가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거주자 본인이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을 명시하였고 부모와 대출자 본인 간 중복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추가의견 없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엄용수 위원 이게 시행이 2018년 부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시행이요?

○엄용수 위원 세수 추계가 2018년으로 돼 있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엄용수 위원 그런데 효과가 18년부터 옳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공제를 받는 연말정산 자체가 18년 초에 있거든요.

○엄용수 위원 아, 적용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적용은 17년인데요……

○엄용수 위원 17년도 상환하는 것부터 적용되네요.

○전문위원 조의섭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의견 없으신가요?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저는 일단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무조건 반대를 하니까, 그런데 형평성의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본인이 대출받아서 직접 그것을 교육비 공제를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합의된 것으로……

○전문위원 조의섭 저희가 수정의견을 하나 냈는데, 공제 대상 중에 학자금만 되고 생활비 대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제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수용을 합니다.

○박주현 위원 예, 생활비는 공제……

○소위원장 이현재 예, 그러면 생활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지만 지금 저희 안에는 시행령에서 그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그게……

○소위원장 이현재 법안에 들어갔으니까 법안으로 하면 문제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영록 지금 현재 조문 체계가 단서로 해 가지고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해 가지고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된 금액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집어넣어야 하는……

○소위원장 이현재 생활비 제외하는 것으로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래서 같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현행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소위원장 이현재 크게 문제없으시겠어요?

○전문위원 조의섭 예.

○소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생활비 문제는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으로……

○박주현 위원 잠깐요, 체크해 볼게요.

그 제외한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착오에 의해서 부모가 공제받은 이 경우를 지금 시행령에서 하면서 생활비도 같이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대출받은 항목에 대한 것이 시행령에 되는 것인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까 먼저 말씀하신 것은 아예 범문에서 빼냈고요. 그것은 안 되도록 빼 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비인데 그 교육비 범위에서 빠지는 것들, 예를 들면 연체료 지급한다든지 생활비 이런 부분을 빼겠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합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5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및 고소득자 세액감면 등 제한 내용입니다.

먼저,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최고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신설해서 현행 최고세율 38%보다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제윤경 의원안은 과표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현행 38%에서 50%으로 인상하는 안, 박영선 의원안은 최고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38%에서 매년 1%p씩 해서 19년 이후 4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김성식 의원안은 10억 원 초과 구간은 45%, 그다음에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구간은 41%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연주 의원안도 45% 최고세율 적용되는 과표 3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기존 과표구간 세율을 일정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연혁을 말씀드리면 소득세법이 일단 89년에 8단계로 줄어든 이후에 96년에 과표구간이 4단계로 단순화돼서 운영되다가, 최고세율 같은 경우도 50%에서 96년에 40%까지 낮아져 왔습니다. 그 이후에 2009년에 과표 6%에서 35%로 하향 조정된 바 있고, 2011년 세법 개정에서 38% 세율이 적용되는 3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13년에 그 구간 개정을 통해서 과표를 3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초과로 하향 조정돼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근로의욕과 저축의욕 및 자본 축적을 저해함에 따라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세 면세자가 48%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감면 정비 등 과세기반 확충 노력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소득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고 최근 5년간 소득세수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80년대 이후 OECD 국가의 세수 대비 소득세 부담 수준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최고세율 38%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반대 논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찬성의견으로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 확보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 OECD 국가들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소득세율 인상이나 최고구간의 신설 조치를 많이 해 왔다는 점들, 그다음에 56페이지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보다도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득세 최고세율의 인상 여부는 세율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수효과, 조세형평성 및 소득재분배 강화의 필요성, 국제적 추세 등 다양한 측면들을 감안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5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구간별 소득세율 조정입니다.

이연주 의원안은 4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3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현행 24%, 35%, 38%의 소득세 구간을 26%, 36%, 41%로 각각 인상하면서 1200만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6%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과세자비율은 낮고 일부 고소득자가 소득세를 부담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포함한 조세 전반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소득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세율 인상에 따른 추가적 세수 확보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조치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누진세율 구조 강화만으로 해서는 재분배 기능 제고라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집중도 심화라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있고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를 통한 세원 확대 정책과 병행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물가연동제 도입 문제입니다.

소득세 과표구간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자는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현행 소득세법은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 시 실질소득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표구간 상승에 따라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게 되어서 실질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소득세의 완전 또는 부분 물가연동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가연동제 도입 시에는 잦은 세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고 미래 세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수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다만 현재의 경제 상황을 볼 때 물가가 비교적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적 세부담 증가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그다음에 현행 근로자 면세 비율이 48%에 달하고 있는데 물가연동제 도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물가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축소되는, 그런 제도 변동 없이도 면세자 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될 수 있고 또한 소득세제도가 복잡해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제 및 감면 정비를 통한 세원 확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의 축소 문제 그다음에 세율구조 단순화 등 여러 가지 전반적인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번 의견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각 의원님들 내신 안과 그다음에 이연주 의원님도 일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이 반대의견, 찬성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는 이 반대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이미 소득세와 관련된 세율 그 부분은 상당히 증가를 시켜왔다. 그리고 OECD하고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이 부분은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부분이 소득세의 어떤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가지고 소득세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연주 의원님 안 중에서 물가연동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과세자 비율이 낮기 때문에, 면세자 비율이 지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할 경우는 지금 저희가 소득세 과세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이게 도입이 되면 과표구간이 상향 조정되어서 과세기반이 더욱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 58페이지에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조치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조치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문위원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조의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나 마찬가지로 사실상 비과세·감면제도가 굉장히 많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면세자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율만 단순히 올린다고 해서 그런 요구되는 효과들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손질을 봐야 그래야 어떻게 보면 소득세……

○이종구 위원 그것은 막연한 이야기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전문위원 조의섭 그러니까 일단은……

○이종구 위원 개선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개선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조의섭 가장 큰 개선은 일단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종구 위원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구만.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어차피 이것은 큰 건이라서 재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각각의 안의 세증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5개 중에 2개만 예정치 안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최고 구간에 대해서 세율 올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세율을 향상, 그러니까 세율을 넓히면서 하기 위해서도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해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 소득세를 높이면 안 되는 이유로서 들고 있는, 오늘 이 검토보고서 말고 이전에 나왔던 것을 봤는데 같은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최근 5년간 소득세수는 크게 증가한 반면 법인세수는 45조 수준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세를 더 늘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근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리자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인세 논의에 가면 우리나라가 소득세가 적으니까 소득세를 올려야 된다고 하면서 법인세 인상하지 말자고 얘기하고, 또 소득세 인상 논의를 하면 법인세수에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떠넘기는 식으로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둘 다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언주 의원께서 물가 연동하는 부분은 저는 반대합니다.

○염용수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나 법인세나 다 세율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를 하고, 지금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부분은 이게 소위 조세법정주의에, 물론 법률에 담지만 이런 불확실, 상황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은 조세법정주의에 굉장히 벗어나는 법 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납세자들이 예측 불가능한 이런 시스템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법으로서로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소득세에서 최고세율을 올릴 때 개인소득세 부담자 중에서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소위 법인세가 지금 22%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염용수 위원 최고세율이 22%이고 이게 38%인데, 사실은 개인사업자들이 세율 때문에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게, 법인 아닌 법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영·제조사업자라든지 이런 자영업자 중에서 최고세율을 올릴 경우에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세율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감내가

되었지만 법인세율하고의 차액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상자는 소득은 똑같은데 소득세율에서 법인세율 사업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세수가 확 증가되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빠져나가는, 38% 적용받는 사람이 22%로 옮기는 이런 상황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더라는 것 말씀드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 상승 국면에 있고 성장률이 한 4% 정도만 되더라도 재정건전화나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위해서 최고세율을 일부 조정을 해서 가자는 면에 대해서 저는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에다가 마이너스 성장을 우려하는 시점에서 소득세나 법인세나 사업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시점에서는 세율 인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또 행정 하는 사람으로서는 흐름을 거꾸로 읽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득세든지 법인세든지 기본적으로 인상할 시점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위원님 말씀, 김광림 위원님.

○金光琳 위원 기본적으로는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팩트 확인하고 논란은 덜 하면서 결정을 넘겼으면 좋겠고.

소득세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조세소위를 그동안 쪽 해 왔으니까 늘 논란이 되어 왔는데, 11년 할 때도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올렸습니다, 11년에. 12년에는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을 35에서 45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13년에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과표구간 3억을 1억 5000으로 낮췄거든요. 이제까지 쪽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55페이지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돈이 모자라 가지고 이것은 꼭 해야 된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세금 더 들어오는 게 금년에 일시적으로 더 들어온 건지 내년 전후에도 계속해서 할지 하는 것을 한번 판단해보면 세율을 맞춰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논란을 해 봐야 되겠어요. 조세형평성 제고하는 그것은 논의를 계속 해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의견, 이 문제는 평

장히 큰 이슈니까 의견들 대개 주신……

박광온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온 위원** 행정실에 김정우 의원님 법안이 혹시 들어와 있습니까?

○**전문위원 조의섭** 그것은 지금 들어는 와 있는데요 날짜가 안 됐기 때문에 상정이 안 됐고, 저희가 국회법에 따라서 소위에 논의된 내용이 있으면 직접 회부해서 같이 심사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같이 심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김정우 의원 안이 아마 여러 안을 종합해서 만든 안 같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고.

김광림 위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어차피 이따다 다시 논의할 거니까 한번 확인……

○**소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실까요.

○**전문위원 조의섭** 6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입니다.

현행 기준금액 20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1996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도입되면서 거주자와 배우자의 금융소득 합계액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하도록 설계되었다가 2002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게 되어 인별 합산방식으로 전환되었지만 그대로 기준금액이 4000만 원으로 유지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2012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서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에 대해서는 저축 및 투자 감소 및 해외로의 자금 유출 등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기준금액의 추가 인하 시에 비과세·분리과세 항목을 활용한 조세회피 유인이 커지기 때문에 자산운용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확대에 납세협력비용과 세정당국의 행정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1000만 원으로 인하하게 된다면 대상자 수가 11만 3000에서 45만 6000으로 한 네 배가량

크게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만 현재 종합과세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38%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통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원천 간 조세 형평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측면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행 기준인 2000만 원의 금융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보면 약 10억 원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준금액 자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담 원칙에 따라 과세를 강화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가계저축률의 상승 추세나 그런 것을 볼 때는 기준금액 인하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고 다음에 해외투자자금이 유출되거나 그런 것에 대한 이탈 가능성은 크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과세 강화하자고 하시는 분들은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과세를 강화자는 의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일단 2013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자산 구성이 아직도 선진국이나 외국에 비교해 봤을 때 금융시장보다는 부동산 위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내 부동산 재산이라는 게 일단은 금융시장이 조금 더 심화돼야 한다는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쪽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지 소득재분배만 놓고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하는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제가 발의자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2012년에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하할 때 사회적으로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처럼 했지만 잘 연착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기준금리가 3%가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가 1.25%여서 이율이 지금 한 3분

의 1 가까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만큼 같이 유지를 하면 자산 규모는 지금 두세 배 높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저는 이 부분을 1000만 원으로 내리는 게 충분히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단순 비교를 하시면 그 당시에는 8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안대로 하면 30만 명이 대상이 되는 걸로 저희는 계산이 되고요.

○**박주현 위원** 양극화로 소득이 집중돼서 그런……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소득재분배라고 놓고 보시면, 자꾸만 양극화라고만 보시면 그렇게 주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박주현 위원** 아니요, 양극화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조세를 정상화하는 거지요. 종합과세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데 외국의 예도, 주요국 같은 경우에 봐도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투명한 소득이니까, 이 부분에는 과세 못 하는 부분이 있고……

○**박주현 위원** 그런데 다른 나라는 20%, 25%인데 우리나라는 14%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가 선진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부동산 쪽이라든지 실물 부분의 자산 비중이 큼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융소득 쪽의 자산 비중이……

○**박주현 위원**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할 때 외국으로 나갈 거다, 안 할 거다 그랬는데 결국은 저축률이 확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방주사를 이미 맞은 것이어서 말하자면 너무 그렇게 전전긍긍할 필요 없이 하여간 그냥 과세 정상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김광립 위원님.

○**金光琳 위원** 또 이걸……

늘 이런 얘기가 나오곤 하는데 2012년도에 소득세법 개정할 때 여러 가지 한 것 중에 하나가 최저한세율 35%로 돼 있는 걸 명목세율 38%로 하든지 아니면 감면을 제외하고 과표의 45%까지를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한쪽으로 올렸어요.

울리면서 그때 또 2012년도에 결정한 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4000만 원 돼 있던 걸 2000만

원으로 내렸는데 2000만 원 내리는 과정도 처음에 여야가 얘기할 때는 2500만 원으로 했다고요.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는데…… 아, 3000만 원으로 합의를 했는데 그다음에 2500만 원 얘기 나오고 하다가 전체회의 가서 다시 이렇게 돼서 2000만 원으로 내려온 겁니다.

내려온 건데 지금 이득이라는 게 2000만 원 미만은 14% 분리과세로 내느냐 아니면 전체 누진속에 집어넣느냐 하는 이 차이인데 현재 그렇게 계속 강화돼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축률은 높아지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돈이 전부 갈 데가 없는 거지요. 갈 데가 없어서 그런데 그런 과세 강화가 계속되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고 3억 돼 있는 걸 1억 5000으로 낮춰서 넓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말씀 안 계십니까?

다른 말씀 안 계시면 이걸 계속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괜찮으시지요?

○**박주현 위원** 예.

○**소위원장 이현재** 계속 논의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6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축소 및 적용기한 설정 내용입니다.

현재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에서 200만 원으로 낮추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총합을 현행 700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적용기한은 2019년 말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연혁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사적연금의 활성화 필요성을 인식해서 2011년부터 공제한도를 300에서 400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고 그다음에 2013년에는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2013년 세법 개정에서는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 외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의 합산액을 700만 원 한도로 신설하고 2015년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납입 시에 연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고 추후 연금 수령 시에 공제받은 납입액과 이자에 대해서 과세하는 과세이연제

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과는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개인연금이라는 게 우리의 소득 대체율이, 국민연금이 소득대체율이 40%대를 유지한다고 볼 때 부족한 공적연금 기능을 보완해서 적정 소득대체율 수준에 하게 하는 그런 취지로 볼 때는 오히려 사적연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중간 정도, 다소 낮은 수준이라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만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혜택이 사실상 고소득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측면이 통계로도 나타나는데 전체 근로소득자의 6.2%인 8000만 원 초과 고소득자의 65.7%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같이 연금공제 한도를 400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하게 되더라도 3000만 원 이하자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 금액은 103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 감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안과 같이 조세특례제도 적용기한을 19년 말까지 설정하는 것은 타당합니다만 정부는 연금이 과세이연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연금자산을 형성한 뒤 여러 해로 분할하여 수령하는 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박 의원님 내신 안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달아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공적연금 부분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축으로서 연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연 400만 원 한도 같은 경우에도 세액공제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과세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과세특례 금융상품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적용기한 설정 부분은 이게 장기간에 걸쳐 납입금을 적립해 가지고 여러 해로 분할해서 수령하는 연금의 성격을 봤을 때 적용기한 설정은 성격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일단 공적연금, 그러니까 사회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는 분위는 정확히 2분위에서 4분위까지입니다. 그런데 연금계좌 혜택을 받는 대상에 2분위 내지 4분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원래 의도했던 공적연금을 보완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혜택 대상이 전혀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세이연 문제는 나중에 가서 받을 때 퇴직소득으로 해서 5%인가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자소득은 14%이기 때문에 이율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얘기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적용기한 문제는 사람들이 대개, 예를 들면 올해 400만 원 들었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말하자면 단위로 끊어질 수 있고 일몰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연금계좌를 드는 사람은 고소득자고요. 이분들은 사실은 노후 걱정이 없습니다. 공적연금이 다 돼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노후 보장을 위해서 또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전혀 불필요하고 오히려 이분들이 그 돈을 소비하도록 해야,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라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소비하도록 끌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대표적으로 정리돼야 될 그런 조세감면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답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김광림 위원님.

○金光琳 위원 우리가 세법소위에서 할 때 크게 놓고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기존 들어오던 세금을 인하해 줌으로써 세입감이 생기는 것, 덜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입감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장래에 거기에서 올 가능성이 있는 게 조금 줄어드는 것. 앞의 건 철저히 막고 해야 되지만 뒷부분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을 400만 원씩 넣는데 혜택을 받는 걸 줄여 버린다고 하면 그 이익이 200만 원 받는 사람한테 옮겨 간다 이런 건 아니고 그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존 정부세입에 세입감이 일어나는 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고 장래에 그거 해 가지고 세입에 변화를 주는 건 조금 여유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재분배 기능이 앞의 부분에는 확실하게 일어나는데 뒷부분은 그냥 연금 가입률도 적고 하기 때문에 현재 하는 대로 그대로 놔두는 것도 괜찮다, 이런 조금 적극적인 해석을 해 주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박주현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이걸로 인한 세감이 9000억이 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퇴직소득에 대해서 5% 과세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원래 보험이나 이런 것에서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하느냐 마느냐, 나중에 퇴직소득으로 가느냐 등등인데 그러니까 이 세액공제를 없애거나 줄인다고 해서 나중에 세수에 문제가 생기는 건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언주 위원님.

○이언주 위원 지금 이 제도는 관점을 세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연금제도와 관련해서 향후에 국가가 사적연금을 확대해 나갈 것이냐, 공적연금을 확대해 나갈 것이냐 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제를 해 준다고 해서 그 공제 대상자들한테 도움은 좀 되겠습니다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보면 공제제도가 전반적으로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데 공제제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금을 좀 감면·축소를 해 줌으로써 다른, 목적 자체가 세수보다는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대개.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전체적인 연금제도를 바라보는 국가적 관점에서 바람직 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유효한가 이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박주현 위원님도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공적연금을 확대하는 쪽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적연금에 불필요한 이런 누더기 같은 제도들을 남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답변드릴 것 없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체계에 대해서만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금은 과거에는 연금 부분에 대해서 공제도 안 해 주고 나중에 받을 때 과세도 안 하다가 연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 주면서, 옛날에 소득공제였지요. 해 주면서 나중에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해서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공제를 안 해 주면 나중에 과세를 안 합니다. 공제를 해 줬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박주현 위원 그것 검토해 보세요. 그것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 다른 보험상품 이런 것에 대한 것하고 같이 비교해서 꼭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노란우산공제도 나오고요 꼭 나오거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게 하겠습니까.

○박주현 위원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더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이종구 위원 한마디만……

○소위원장 이현재 예,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제가 지난번에 전체 본회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복지를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복지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그러면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뭐냐?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출산 쪽 예를 들면 육아 또 보육 이런 쪽의 복지 수요는 상대적으로 늘리고 노후 쪽, 노후 보장하는 것은 오히려 줄인다면 이상하지만 이것을 늘리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볼 적에 하여튼 지금 박주현 의원이 제안하신 이러한 것은 그 방향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자꾸 어린애들한테 주는 것 그런 것은 늘려야 된다고 그리고 노·장년층에게 가는 것 이것은 되도록이면 줄여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서 미래지향적으로 복지체계를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소신하에서 이것은 괜찮다.

그런데 다만 그다음 뒤에 나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뒤에 것은 금융기관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저축성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이 달라요.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농협이라든지 또는 중소 금융기관이 아직도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다가 자꾸 세금을 때리는 것은 좀 맞지가 않

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그림만 얘기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것은 재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6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험료 합계액 2억 원 이하 장기 저축성보험 등의 보험차익 비과세 폐지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생명보험·손해보험 등 모든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현재 시행령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기 저축성보험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의견으로서 장기 저축성보험 등에 대한 비과세는 국민의 노후자금 준비를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웨덴,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도 보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장기 저축성보험 등에 대한 비과세가 폐지가 되면 저축성보험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업계 같은 경우에는 영업실적 악화가 불가피하고 보험모집 종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2년 세법 개정 당시에 기획재정위에서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적은 종신형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바가 있으며 이 내용이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찬성의견은 저축성보험은 예금과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비과세 혜택이 일부 고소득자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2억 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축 여력이 있는 일부 고소득자에게 한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현 정부의 금융소득 과세강화 방침과 부합되는 측면이 있고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를 통한 세원 간 과세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최근 가계저축률의 상승 추세를 감안할 때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유지 필요성은 그렇게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급격한 폐지에 따라 반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행 2억 원의 비과세 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개정안 부칙에서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비과세 혜택을 전제로 기존에 가입했던 가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상 신규 가입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도 보험의 이런 사회적 기능이나 장기저축을 유도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런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비과세를 하지만 이런 과세 특례요건은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축성보험의 전면 과세 전환은…… 또 당장은 과세 전환하기에는 여러 가지 보험시장이라든지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지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없습니다.

○박주현 위원 재논의하는 것으로……

○이종구 위원 아까 저는 반대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의섭 7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폐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일반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손해보험산업의 성장으로 볼 때 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필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를 폐지함으로써 일부 세수 확보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감소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폐지가 된다면 근로소득자들의 조세저항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4년도 귀속분 소득금액 신고 인원 1663만 명 중 46.3%에 해당하는 770만 명 정도가 보험료 특별공제 혜택을 받고 있고 공제액 8364억 원 중 근로소득세수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이 공제제도가 폐지된다면 상당수 근로소득자들이 사실상의 증세로 인식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평균수명 연장 및 사회적 위험의 복잡·다양화 등으로 볼 때 보장성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정부는 일단은 보장성보험료 공제제도가 공제한도나 공제율이 다른 세액공제제도에 비교해서 이미 낮은 수준이고요.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 필요경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세제를 축소할 경우에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이 전문위원 표현으로 매우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아까 장기 저축성보험의 경우에 계속 한도를 낮춰 오고 있는데 아직 2억까지도 되기 때문에 사실 강남 아줌마들은 다 알지요, 이것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것을. 10년 물어 놓을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거의 금융종합과세도 다 피해갈 수 있는 액수가 상당히 확보가 되는 것이고 가족별로 2억 원씩 10년씩 들으면 비과세니까요. 없애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보험료만 해도 사실 이것이 다 차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자동차 없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것이고 등등해서 하여간 재논의를 해 주시면 그때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金光琳 위원 강남구 지역구 위원님이 한 말씀 하셔야 되겠는데요.

(웃음소리)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은 계속 검토할까요?

○박주현 위원 예.

○소위원장 이현재 재논의가 아니고 계속?

○박주현 위원 계속이라는 것이…… 재논의, 재논의.

○소위원장 이현재 계속은 계류해서 논의한다는 거지요.

○박주현 위원 재논의.

○박광은 위원 재논의.

○소위원장 이현재 예.

다음 하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7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기산일 조정입니다.

현행법은 2016년 이전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해서 토지 보유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기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 따를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매각이 지연되어서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보유기간 기산일을 조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행법과 같이 기산일을 2016년 1월 1일로 규정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3년 이상 토지 매각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양도인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양도시기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비표와 같이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앞부분은 저희 정부안인데 수정의견이 소급적용을 하자는 말씀이신데……

○전문위원 조의섭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 부분은 아시겠

습니다마는 이미 신고납부가 대부분 이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환급이 발생하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또 유사 사례가 계속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매우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논의를 계속……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기산일을 이렇게 조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난해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 주면서 기산일을 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렇게 하다보니까 장기보유공제를 받으려면 최소한 3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6년, 17년, 18년까지 거래가 동결될 우려가 있다 그것이 가장……

○엄용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기산일을 취득일로 바꾸게 된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된?

○金光琳 위원 취득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엄용수 위원 2016년이 아니고 취득일로 보유기간을 기산하게 된 그런 정당성이랄까, 기존에 시행되는 법규가 불합리했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엄용수 위원 그래서 시행을 하는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불합리한 규정을 기존에 적용받던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그런 성격의 법이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가능한 시행 시기도 2016년도부터 소급적용 하더라도 그것은 법 근본 개정 이유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발생 사례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미 신고 납부가 되고 이행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김광림 위원님.

○金光琳 위원 이것은 검토의견의 논점이 16년 1월 1일부터로 된 기산일을 취득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주 논의 대상이고 그 뒤에 소급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인데 부차적인 논의에 설명을 너무 길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작년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안 맞는 거니까, 좋지 않은 거니까 10%를 추가 과세를 하자 이것이 하나이고, 한쪽으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10% 양도 차액에 대해서 추가 과세를 하자 해 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좀 많이 매기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땅을 팔도록 해 가지고 그쪽에는 오래 가지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10 내지 30% 정도의 과세대상 금액을 제해 주는 그런 제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다 통과되었다고, 다 되어 가지고 다 맞았는데 마지막에 류성걸 의원이 ‘잠깐’ 해서 이것 기산일로 하면 그동안의 정부 정책을 믿고 미리 팔았던 사람하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하고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논의되면서 저도 그 논의에 가세를 해 가지고 어떻게 그때 했느냐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현재 제도로 바뀌어지지 않는 기본세율로 양도세 기본세율 38% 내는 것보다가 더 적게 내는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형평이 안 맞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앞에 것은 채택됐고 뒤에 것은 기산일이 16년으로 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 정부에서 하나 보셔야 될 것은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정말로 비업무용 토지를 오래 장기보유 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안 팔고 계속해서 있으면 이것이 문제고 아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파는 사람 팔고 있다 하는 통계를 좀 설명을 해 봐요. 작년에도 얘기할 때 이렇게 되면 장기보유 한 사람들이 땅을 안 팔고 하기 때문에 집 짓는 데도 땅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부동산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계속 했는데 이것 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한 9개월 동안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일단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다음 논의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光琳 위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정말로 매매가 되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기준을 당초에 원래 정부가 가져왔던 취득일 기준으로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소위원장 이현재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그게 순리지. 취득일로 하는 게 순리고 제가 이 안을 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아주 많아가지고 많은 사

람들이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는 생각을 달리 하는 분들이 있지만 부동산에 있는 여러 가지 명에 이런 것을 건어줘야 돼요. 그래 가지고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활성화라면 말이 그렇지만 뭔가 규제 이런 것을 완화해 가지고 거래를 해줘야 되거든, 거래를. 그런데 그런 것의 첫걸음 비슷한 것이지.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려고 그러는데 세금 잔뜩 때려 맞고 이러면 누가 그것을 파냐고.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를 촉진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안을 낸 겁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위원님 말씀……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취득일로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개정안이 나왔을 때 문제 제기가 됐던 그 문제가 그대로 다시 나오는 거 아닙니까?

○金光琳 위원 역전현상은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래도 매매는 될 거다 하고 전세를 했는데 매매가 정말로 절벽이 되어 가지고 한 건도 안 팔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정부에서 설명자료를 내달라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것은 정부에서 다음 논의 때 지금 말씀하신 매매실적, 그간 현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실까요?

○전문위원 조의섭 7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외전출 시 주식 양도소득세 관세특례 신설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인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에 국외전출일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전출세를 도입함으로써 이민 등을 통한 역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주국에서 과세를 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부는 조세조약 체결 등 이중과세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병행해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추가 의견 없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데 지금 뒤의 부분에 대해서 이중과세 조정 관련된 의견을 주셨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납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琳 위원 이중과세 문제만 없으면 뭐……

○이혜훈 위원 예, 해야지요.

○이종구 위원 적극 찬성.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것은 합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다음까지만 하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7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식 양도차익 대주주 범위 확대 문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그 기준을 주식 등의 합계액 1%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으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해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보입니다. 과세대상은 중요한 과세요건이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대주주의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억 원 이상으로 현행과 같이 확대된 것이 2016년 4월이기 때문에 불과 6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아서 그 성과를 좀 더 지켜본 후에 점진적으로 과세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혜훈 위원 성과라는 게 뭐가 성과가 필요해요, 확대하는 거지?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정부안도 현행 규정이 금년 4월부터 시행된 점을 감안할 때 2년 후인 2018년 4월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혜훈 위원 아니, 이것을 통과시키고 시행일을 예로 들면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 그렇게 하면 되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는 4개월이 됐다고 하는 거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맞습니다.

○**金光琳 위원** 4월로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지금은 1년 정도 된 거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데 저희는 4월로 하면서 기준은 25억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요.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위원님 말씀.

○**金光琳 위원** 이게 25억, 20억, 10억 할 때가……

○**이종구 위원** 언제 한 거야?

○**金光琳 위원** 작년……

○**전문위원 조의섭** 저희가 그다음 페이지에 연도를 적어 놔습니다.

○**金光琳 위원** 그전에 돈이 나오는 구나. 50억, 40억, 10억에서 25억. 반으로 줄었네.

○**이혜훈 위원** 차제에 이것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행일을 그러면 17년 4월로 하든지 하면 되잖아요.

○**소위원장 이현재** 이언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언주 위원** 대주주 범위 확대 성과가 될 말하는 거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이게 법 시행이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도 평가하거나 그런 것들을 좀……

○**이언주 위원** 평가, 무슨 기준?

○**전문위원 조의섭** 세수나 이런 것들을 보고나서……

○**이언주 위원** 이게 아까도 계속, 지금 어쨌든 조세소위니까 세수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너무 지금 세수가 목적이 아닌 법안들에 대해서 세수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이것은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하면 지금 흐름상 그냥 동의해서 통과시키면 될 거 같고, 다만 이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 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세요? 여기 금융위원회에서는 나오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하면 주식거래량이 상당히 줄까? 어떨 거 같아요? 주식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주식거래량이 더 줄고 주식거래에 관련된 세금이 오히려 더 줄면 그게 여기에서 들어오는 세금하고 그거하고 상쇄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 부분 저희도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러면 한번 챙겨보지요.

○**이혜훈 위원** 양도차익과세의 장기적인 방향이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거고, 지금 이게 양도차익과세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은, 단기적인 세수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이현재** 이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통계 확인해서 재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光琳 위원** 협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13년 7월 달에 50, 40씩을 반으로 전부 줄였거든요, 퍼센티지도 줄이고 반으로 줄였는데. 그리고 2년 6개월, 3년 좀 못 되는데 한 거니까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그 효과라고 하는, 전문위원이 효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수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만약 이게 이렇게 진전된다고 하면 나는 2017년 1월 1일로 하는 게 맞는지, 2018년 1월 1일로 하는 것도 세법상 불가능한지 한번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주십시오.

○**소위원장 이현재** 함께 검토해 주시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4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또 1회독은 좀 빨리 했으면 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金光琳 위원** 의총이 40분 만에 마쳐지나?

○**이종구 위원** 안 되지. 4시 40분에 해서 몇 시쯤 끝나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현재** 한 6시 전까지는 해야지요.

○**金光琳 위원** 5시에 하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1회독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도 못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현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들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제1차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 광 립	박 광 온	박 영 선	박 주 현
송 영 길	엄 용 수	이 언 주	이 종 구
이 현 재	이 혜 훈		

○출석 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 의 섭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 1 차 관	최 상 목
세 제 실 장	최 영 록
조세총괄정책관	안 택 순
소득법인세정책관	임 재 현
재산소비세정책관	이 상 원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 상 율
조세심판원행정실장	신 봉 일